현 장 설 명 서

1. 건　명 : 칼트로지스부산(주) 천막동(텐트하우스) 신축 공사

2.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 08. 21.(금) 10:30
   나. 장　소 : 2층 회의실

3. 현장 설명자
   주　　관 : 경영지원팀 이사 : 곽 호 종
   시방서 및 현장 설명 :　　대리 : 오 영 석

4.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5. 입찰등록 장소 및 일시
   가. 등　록 : 칼트로지스부산 2층 경영지원팀
   나. 일　시 : 2020. 08. 26(수) 10:30까지

6.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 08. 26(수) 11:00
   나. 장　소 : 칼트로지스부산 2층 회의실

7. 유의사항
   가. 본 "칼트로지스부산"에서 배부하는 현장설명서,입찰자유의서,시방서 등 제반 관련서류는 당 "칼트로지스부산"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 또는 복제할 수 없다.
   나. 현장설명서,입찰자유의서,시방서 등 설계도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시에는 문서로 질문하여야 하며, 본 "칼트로지스부산"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기　　타
   입찰일시 및 장소는 당 "칼트로지스부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칼트로지스부산 경영지원팀
주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 4로 16-15번지
전　화 : 051) 366-8022
F A X : 051) 366-8008

입 찰 자 유 의 서

건　　명 : 칼트로지스부산(주) 천막동(텐트하우스) 신축 공사

입 찰 일 시 : 2020년 08월 26일(수) 11:00

장　　소 : 칼트로지스부산(주) 2층 회의실

칼트로지스부산(주)

입 찰 자 유 의 서

이 유의서는 칼트로지스부산주식회사 (이하 “칼트부산”이라 한다)가 행하는 칼트로지스부산(주) 천막동(텐트하우스) 신축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1 장 입찰자 유의사항

제 1 조 (발주 대상 및 인도조건)

(1) 발주대상은 시방서 및 기타 관련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한다.

(2) 인도조건은 “칼트부산”이 지정하는 장소에 작업 완료 후 인수 조건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 “칼트부산”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 될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입찰등록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2020년 8월 26일(수) 10:30까지 당 “칼트부산”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 참가 신청서(현장설명회 참석시 배부) - 당사 양식기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라.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법인 등기부등본) --------- 각1부

마. 국세청 발행(전년도)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1부

바. 입찰보증금 : 입찰총액(VAT포함)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사. 신분증 및 기타 필요서류

제 3 조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시 입찰금액의 10/100이상의 입찰금액을 현금 {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은행“ 이라한다)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으로 납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칼트부산”을 피보험자로하는 보증금액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3. 해당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 4 조 (입찰보증금의 처리)

(1)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칼트부산”에 귀속시킨다.

제 5 조 (입찰서의 작성)

(1) 입찰서는 당 “칼트부산”의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 상의 입찰금액은 제 1조의 입찰대상에 대한 현장 공사완료 후 인수도가격 기준으로 제세금(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제 6 조 (입찰서의 제출)

(1)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며 당 “칼트부산” 소정양식에 의한다.
(2) 입찰서는 봉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봉합된 봉투후면에 입찰자 상호를 기재하여 상,중,하 3개소에 날인한다.
(3) 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 7 조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1) 동시 투찰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의 총액최저가(제세금포함) 낙찰제.
(2) 낙찰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3) 입찰은 3회까지 실시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최저가 응찰자 순으로

수의시담을 실시, 당 “칼트부산”예정가격 내에 합의되면 낙찰자로 선정.

제 8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8.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9.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입찰.

제 9 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입찰참가를 제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 등을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물품의 품질,수량을 부정 납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거나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5. 당 “칼트부산”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자.
6.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8.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10.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제 10 조 (입찰사항의 변경 등)

“칼트부산”은 필요한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변경사항을 입찰 전에 입찰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제 2 장 계 약 일 반 사 항

제 11 조 (계약의 체결)

(1)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칼트부산”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계약이행보증금)

(1)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칼트부산”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칼트부산”에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제3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차액보증금)

(1)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제 3조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2)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

제 14 조 (금액의 고정 및 물량 정산)

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계약기간 중 고정한다.

제 15 조 (대금지급)

(1)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당 “칼트부산”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칼트부산”은 제 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16 조 (물량의 증감 및 규격 변동)

(1) 신규 규격 등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7 조 (지체상금)

(1) 계약자는 계약서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한 익일로부터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2) 제 1항의 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당 “칼트부산”의 사정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3) “칼트부산”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8 조 (하자보수보증 기간액)

(1) 하자보수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목적물 인수도일로 하며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제 1항의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또한 당 “칼트부산”으로부터 하자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은 전체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10% 로 하며, 제3조의 방법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계약자가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칼트부산”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은 “칼트부산”에 귀속된다.

제 19 조 (계약의 해지)

"칼트부산" 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절차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기간 내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자의 거소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이 한때
3. 2회 이상 검사에 불합격 할 때
4. "칼트부산" 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제출서류등 기타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지연 시켰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 하였을 때
6. "칼트부산" 의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 시켰을 때
7.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 3 장 기 타 사 항

제 20 조 (하도급 금지)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칼트부산" 에서 인정한 전문공사 부분은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 21 조 (관계서류의 숙지)

입찰자는 "칼트부산" 이 정한 현장설명서, 입찰자유의서, 시방서 및 관련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과 관련된 문서 등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칼트부산" 의 해석에 따른다.

제 22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내역서, 입찰자유의서, 기타계약에 관한 문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 23 조 (입찰조건의 변경)

관련서류상의 규격 또는 물량 등이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문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본 “칼트부산”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야기되는 추가비용 및 추가용역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 24 조 (복제 또는 타인에의 대여)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칼트부산”의 승인 없이 복제 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 25 조 (준용규정)

본 유의서에 규정되지않은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칼트부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제 26 조 (조문의 제목 해석)

본 유의서의 각 조문의 제목은 독립하여 효력이 없다.